

#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주)이룸 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가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 (이하“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수수료의 구분)

본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일임 및 자문자산에 적용되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① “기본수수료”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투자자문 또는 일임운용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고정적으로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성과수수료”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투자자문 또는 일임운용 만기, 중도해지시 사전에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기본수수료 외에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③ “중도해지수수료”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계약의 중도해지시 사전에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제5조 (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투자자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중도해지시 부과절차)**

- ①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기수령한 선취수수료에서 경과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후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 ③ 계약의 해제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별지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에 의거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한다.

**제8조(설명 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회사는 이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기준 및 절차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본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본 기준은 08월 25일에 개정되어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투자일임수수료의 산정과 지급방법

당사의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1. 일반적인 경우 수수료 체계 및 산정방법

구분	수수료율	산정방법	지급시기
기본수수료	협의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	협의	총 수익금액 X 성과수수료율	계약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2. 계약기간 중 증액시 또는 중도해지시 수수료 체계 및 산정방법

구분	수수료율	산정방법	지급시기
기본수수료 (증액시)	협의	추가설정금액 X 기본수수료율 X(잔존일수/365)	증액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중도해지 수수료	협의	선납수수료 X 중도해지수수료율	중도해지일
성과수수료 (중도해지시)	협의	(최종평가금액-계약금액)X 성과수수료율	중도해지일

\* 수수료 금액 산출시 천원 미만은 절사함